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투자 국가안보위해 심의·결정 관련
자료요청 및 조사주체 확대〉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13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 마련	3
2. 국가정보원의 외국인투자 국가안보위해 조사권한 및 위임·위탁근거 마련 등	8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균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6.
3. 회부연월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 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또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안보위험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정보원장을 조사주체에 포함하되 그 권한을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한정하고, 조사대상을 기존의 “투자한” 경우에서 “투자하거나 투자할” 경우까지 확대

하여 사전적 예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보완·강화하고
국가산업 보호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Ⅲ. 검토의견

1.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생략) <u><신 설></u>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특허청장, 금융감독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다.</u> <u>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22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대외무역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생략)</u>	<u>③ (생략)</u>
<u>③ ~ ⑦ (생략)</u>	<u>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u>

현행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1)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금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자금 운영 등 이 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등에 따라 정부 내 일반적인 자료는 요청·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러나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면밀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해서는 상세정보가 필요하고,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 따라 외환거래·금융거래정보, 대외무역 관련 정보 등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는 자료도 요청해야 할 수 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 1. 27.>
3.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표 2] 개정안 조문대비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仲介)·중계(中繼)·집중(集中)·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8. (생략) (※ 법원제출명령, 조세 관련 과세자료 등)

「대외무역법」

제29조(비밀 준수)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5조제5항제4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해당 무역거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 기관이 국가안보위해 여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안보심의 및 투자제한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일반적인 자료요청 규정에 대하여 법제처는 “과세정보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

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²⁾³⁾을 받으므로 일반적인 자료요청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법제처 해석례 및 다른 입법례(참고자료 참조)를 고려하면 과세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세청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법제처·행정안전부 표준입법모

2) [법제처 09-0365, 2009. 11.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관련)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회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의 자료제공요청 규정은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러한 일반규정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참고로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대해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례 참조

텔(2014.9.)에 따라 요구기관, 이용목적, 대상기관을 명시하고, 요구정보 종류를 각 호로 명시하거나 요구정보 범위가 법률상 구체적으로 한정되도록 규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며,

경찰청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에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동 개정안과 같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외국인투자 관련 자료 요청권한을 부여하려는 취지의 유사 개정안⁴⁾ 2건이 현재 우리 위원회 법안소위에 심사(2025. 9. 10.)된 후 계류된 바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경과 및 논의사항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의안번호 제2210373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2025. 5. 2. 발의
의안번호 제221202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 2025. 8. 6. 발의

2. 국가정보원의 외국인투자 국가안보위해 조사권한 및 위임·위탁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 등에 한하여 산업
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자금 운영 및 외국인
투자 허가·신고 이행사항을 조사하게 요청할 수 있고, 조사범위를 기
존의 ‘투자한’ 자금 등에서 ‘투자하거나 투자할’ 자금 등으로 확대하며
(안 제28조제3항),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
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생략)	제28조(보고·조사 및 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생략)</u>
<u>3. (생략)</u>	<u>4. (현행 제3호와 같음)</u>
<u>②</u>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u>관계 행정기관의</u>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u>③</u> ----- ----- ----- <u>관계 행정기관의</u> <u>장 및 국가정보원장</u> ----- ----- ----- <u>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외국</u> <u>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u>

현행	개정안
1.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생략) ③ ~ ⑦ (생략)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산업통상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u>국세청장</u>, <u>관세청장</u>, <u>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u>, <u>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u>등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u> 1. -----<u>투자하거나 투자할</u> ----- -----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 ----- ----- -----<u>국세청장</u>, <u>국가정보원장</u>, <u>관세청장</u>, ----- ----- ----- -----.

우선, 국가정보원의 조사권한 부여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자금 운영 및 외국인투자 허가·신고 이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한 기술유출 범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이

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기술유출 사례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술유출 발생 이후 사후적 대응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단계에서부터 국가안보 위해 가능성을 보다 엄밀하게 점검·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표 1] 최근 5년간 적용법률별 기술유출 범죄 단속 통계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산업기술보호법	9	11	16	19	22
부정경쟁방지법	72	78	93	86	118
형법 등	8	15	40	18	39
합 계	89	104	149	123	179

주: 연도별 검찰 송치 건수

자료: “경찰청, 2025년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보도자료(2026. 1. 20.)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4년 8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안보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제도를 강화⁵⁾한 바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는 형식적인 투자구조 외에도 실질적 지배관계, 우회투자 및 해외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정자료만으로는 이를 판단하

5) 자료: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개선으로 외투 촉진과 투자 안보 모두 잡는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4. 8. 26.

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보수집 및 분석역량을 갖춘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현행법상 일반적인 조사협조권한 근거만으로 폭넓은 조사에 참여할 경우 조사범위 및 권한 한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을 조사주체로 명시하는 한편, 조사범위를 법률상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으로 명시하여 국가정보원의 협조 및 조사수행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안보위해 조사·심의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사권한 행사에 대한 명확성 및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상 조사대상이던 ‘투자한’ 자금 및 자본채를 ‘투자하거나 투자할’ 자금 및 자본채로 확대하고 있는데,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어 조사대상 역시 광범위하게 확대될 소지가 있음.

참고로 이와 같이 ‘투자할’ 자금 및 자본제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의 개정안⁶⁾이 우리 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나, 소위 논의(2025. 9. 10.)시 조사범위의 과도한 확대가능성을 우려하여 현행유지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권한 위임·위탁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 및 시행령⁷⁾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신고·등록, 등록말소 통지 등에 관한 집행실무에 관한 권한을 대한무역투자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이행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조사내용·사항에 따라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주무부장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음.

6) 의안번호 제221202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 2025. 8. 6. 발의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1. 삭제 <2016. 7. 28.>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대한 위반 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법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위반 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법 제28조에 따른 권한 중 외국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 또는 신고내용의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

2.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유의 확인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내용의 통보

5.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사실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지 또는 공시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을 일부 위임·위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부 역시 실효성 있는 안보심의제도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 및 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위임·위탁 대상 사무 및 권한을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관광진흥법」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상호
2. 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
3. 즉시환급 실적(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을 말한다) 제출 여부
4. 면세판매장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 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